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유진투자선물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에 임한다.

제3조(주문의 녹음등) 회사는 고객의 주문사실 및 주문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음이나 기타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관계법규의 준수) 고객과 회사는 국내·외의 관계법규 및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의 규정과 제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1.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그 수탁이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수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빈번히 이행하지 않는 등

신용이 불량한 경우

2. 고객의 재산상황·직업·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규정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수탁의 한도) ①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수탁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 주문의 수탁을 거부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일정기간동안 또는 일정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는 경우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2.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규모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회사는 해당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위탁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신규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탁증거금중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하도록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한다.

제9조(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고객은 평가예탁총액이 회사가 정하는 유지증거금 수준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 이전에 필요한 증거금 수준 이상의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한다.

제10조(위탁증거금 반환)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현금 및 대용증권의 합계액에서 평가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증거금 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결제대금의 납입) 고객은 반대매매를 통하여 결제를 하거나 최종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현금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 예치기관에 예치중인 수탁현금 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실을 지급한다.

제13조(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시처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사전승인 없이 고객의 미결제 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하여 미납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한다.

1. 고객이 회사로부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요구를 통보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 고객은 해당 부족액에 대한 예탁 또는 납입책임을 부담한다.

③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예탁액이 필요한 증거금(수수료등 기타 경비포함) 상당금액이하로 하락하는 때에는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받아야 하나 고객의 귀책사유로 연락이 안되는 때에는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의 미결제약정 또는 예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④ 고객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부족분에 대하여 회사가 대납한 경우 고객은 대납원금에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4조(대용증권 예탁 및 관리) ① 고객은 위탁증거금 중 현금으로 예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현금 대용으로 인정하는 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청구금액이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에 소요된 비용임을 고객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제15조(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거래규모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해외파생상품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제17조(거래내용등의 통지·효력) ① 회사는 고객이 주문한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체결되거나 고객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최종결제 또는 권리행사의 배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월간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기타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는 다음달 20일까지, 반기동안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종료 후 20일까지 그 내용을 우편, 컴퓨터통신 또는 기타 발송사실 및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회사에 통지한다. 고객이 변경된 주소 또는 연락처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의 변경전 주소 또는 연락처로 통지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도달되어야 할 시점에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수수료등 비용) 해외파생상품거래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제반비용 포함)은 회사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옵션거래의 권리행사) 고객의 옵션거래 매수미결제약정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도래한 때 위탁수수료 등 권리행사에 수반되는 제비용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주문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제20조(환전)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환전의 시기 및 방법은 고객이

지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등과 관련하여 환전의 필요성이 있으나 고객이 사전에 달리 지시한 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고객이 지시한 방법으로 환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는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적정한 환율로 고객의 예탁금등을 환전할 수 있다.

제21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22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재내용 변경통지) 고객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개설신청서 상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지한다.

제24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 및 관계약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 및 관계약관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5조(분쟁조정)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장외거래에 대한 적용특례) 회사와 고객은 필요한 경우 장외시장에서 거래 되는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약관으로 정할 수 있다.

<별첨 >

1. 제8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해외거래소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기준으로 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당사 홈페이지 www.eugenefutures.com > 고객지원 > 증거금 > 해외선물증거금에 안내한다.

2.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은 익영업일의 16시로 한다.

3. 제11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결제대금의 납입시한은 익영업일 16시로 한다.

4. 제12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과실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외파생상품 예탁금에 대해서는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5. 제13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연체료율은 연 15%로 한다.

6. 제18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등은 다음과 같다.

당사 홈페이지 www.eugenefutures.com> 고객지원> 수수료 및 예탁금이용료에 게시한다.

7. 기타 특약사항